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화단지 지정 우선 고려 대상에 재생에너지 등 전력
여건 반영 및 국고보조금·주택공급 특례 등〉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48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특화단지 지정 우선 고려 대상에 재생에너지 등 전력 여건 반영	3
2.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특화단지 우선 지정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및 주택공급 특례	10
※ 참고자료	14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규정	14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지정현황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6.
3. 회 부 일 : 2024.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에 투자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런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처럼 반도체 · 이차전지 ·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고품질 · 대용량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으나 전력공급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중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 특화단지에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2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화단지 지정 우선 고려 대상에 재생에너지 등 전력 여건 반영 (안 제16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개정안은 특화단지 지정 우선 고려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추가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전략 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은 전력계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u>지역</u> <u><신설></u>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지역</u>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에 <u>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정한다</u>)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총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u>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법 제16조¹⁾제3항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i) 수도권 외의 지역, ii) 법 제16조제1항제1호 해당 지역(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법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²⁾에 따라 전략산업 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 여부,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³⁾

분야	특화단지명	수도권 외의 지역	법 제16조제1항 제1호* 해당
반도체(2개)	용인·평택	-	○
	구미	○	○
이차전지(4개)	청주	○	○
	새만금	○	○
	울산	○	○
	포항	○	○
디스플레이(1개)	천안·아산	○	○
바이오(5개)	인천·시흥	-	○
	대전	○	○
	화순	○	○
	춘천·홍천	○	○
	안동·포항	○	○

* 주: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 하려는 지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⁴⁾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현행 특

2) 동법 시행령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및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규정은 [참고자료 1] 참조

3)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도는 [참고자료 2] 참조

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특화단지 지정 요건) ① 영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화단지 내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선도기업이 있을 것
2. 특화단지 내 조속한 성과 창출 가능하고, 산업·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입지 및 기반 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화단지 지정 심사 평가항목에는 재생에너지 또는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표 3]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심사 평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 지표	점수
I.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 특화단지의 목표·비전 및 추진전략 -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해당 지역의 수요·공급기업, 대학·연구소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2. 첨단전략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효과 -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등의 투자 계획 - 특화단지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관련 산업·경제 파급효과 - 특화단지 내 선도기업 및 소재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 등의 기술 역량	
II.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 특화단지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신규 부지 활용 시, 부지개발 여건 및 확장의 용이성 2. 첨단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 소재 지역 내 첨단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 수급 현황 및 육성 방안 3.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 특화단지 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현황 및 계획	
III.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1. 지역 주요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의 연계발전 가능성 - 지역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등에 대한 파급효과 2.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 지자체가 기 발표한 정책 및 제도와의 관련성·정합성 - 지자체의 지원의지 3. 국가균형발전	

서로 간 파급효과가 있을 것

4.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대학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 연구기관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기업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을 것
5.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계획, 조례 등과 전략산업등 간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것.
6.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화하였으며, 서로 간의 협력 및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정 시에는 전력공급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 고려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추가하고(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사업자·지원시설이 집단 입주한/하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정(안 제16조제3항제2호 개정)함으로써,

전략산업 특화지구 선정 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원 확보 여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의할 경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특화단지 지정 검토 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량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가능성을 높이고,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제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 주요 수요·공급 기업들이나 금융기관 등이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과정에서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향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소비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지역과 전력 소비 지역 간에 물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송전망 구축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반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에 특화단지가 지정되는 경우 이를 연결할 송전망 건설 비용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많아도 전력계통이 포화되어 전력생산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생산시설이 입주하여 전력 수요를 충당함으로써 전력계통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특화단지 선정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여건과 인력수급, 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등 전반적인 여건이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3조제2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 해당 지역(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중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사항은 특화단지 지정 시 발전·송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전력 설비 신·증설을 통해 보강·개선이 이루어지므로, 특화단지 지정 시점에서의 전력계통 여건만으로 특화단지 입지를 평가·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재생에너지는 원전, 수소, 연료전지 등과 함께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로서 다른 무탄소 발전원과 함께 전력·용수·도로·폐수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 여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동 개정예 신 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특화단지 우선 지정 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인상 지원 및 주택공급 특례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개정안은 안 제16조제3항제3호(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총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 따라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및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4]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2(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의3(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아 우선 지정된 특화단지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인상 및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현행 특화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비 지원 관련 사항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특화단지 업종, 투자규모, 지역 등에 따라 산업기반시설 구축 사업비의 15~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주택공급 관련 특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에 의할 경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지정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효과적인 국고보조 사업이 마련된다면 해당 지역의 특화단지 조성에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해서는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가 주택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거나 주택공급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경우 특례 적용의 대상과 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경우 거주여건이 개선되어 특화단지 인력수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 인상과 함께 특화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정책적인 장려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특화단지를 우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와 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동 특례의 적용 대상을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로 규정하고 있어 특화단지 지정 이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특화단지 중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일정 기준을 상회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단지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는 각각 국가 재정 여력, 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기재부, 국토부 등 소관부처가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국비 보조금은 사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산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여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택법령 및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국가시책이나 지역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주택공급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주택시장 질서 안정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0

[참고자료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투자,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특화단지 지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지역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⑤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

해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
 -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 3.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5.>

[참고자료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지정현황

